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이익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아래와 같이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청구·신청)을 대리합니다.

□ 목적

- 사고피해자인 청구·신청인들은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제5조(청구방법) 및 금융분쟁 조정세칙 제12조(대표자의 선정)·제13조(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청구·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청구·신청인 대표"라고 합니다.) 외 청구·신청인 2명을 선정하여 표제사건[*사건명: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의 오류 위법·무효확인 등 권리구제를 위한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병합)]의 청구·신청 및 교부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대표에게 위임하고, 위임과 관련된 사법상의 한계 및 범위 외에도 상호간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정하여 자율적인 분쟁조정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또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는 청구·신청인들의 표제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취지, 원인, 관련증거(금융거래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파기와 관련된 처리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합니다.

□ 임의 한계와 수권의 범위

○ 청구·신청인들이 청구·신청인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하는 위임의 한계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사무	한계	범위
국민검사청구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검사청구 처리 사항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5조
		(청구방법), 제6조(검사청구의 접수),
		제11조(의견진술), 제17조(결정통보),
		제18조(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등)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부터 제43조까지 분쟁조정 처리 사항	소비자보호법 제19의2(자율적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의2(자율조정절차 등)
		및 제12조 제5항(대표자의 행위)

○ 위 세칙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분쟁조정(민원)의 위임 시 금융감독원이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위임장(<별지 제5-2호 서식>)에서 정하는 위임내용과 관련된 수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분쟁조정)내용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위임내용 : 1.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조정)신청하는 권한 일체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
 - 3. 민원(분쟁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 4. 민원(분쟁조정)을 취하하는 행위
 - 5.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등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2.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및 동 행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18)

○ 위와 관련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임받거나 수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사건의 청구·신청부터 검사·조정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유상으로 법률사무(예: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서면작성 등)를 취급하거나 알선해드리지 않습니다.

□ 위임사무

○ 청구·신청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청구·신청인 대표가 대리하여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사무	처리 방법 및 절차	
1. 청구·신청서 제출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제5조 제1항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 청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작성양식(예시) 한글파일 제공 • 작성 완료된 서면 내용을 온라인 설문품(https://moaform.com/q/smHdAb) 및 이메일(finance2@ccej.or.kr)로 한글파일로 접수받아 구비서류 등 청구·신청요건 확인 후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전자문서로 회신 • 200명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파기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제5호 제2항 및 제3항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위와 같이 청구・신청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청구・신청 내용(취지, 원인, 관련증거자료) 수집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다음의 구비서류 각 1통씩 수취 및 대리제출 - 민원(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서(민원만족도 평가 관련) 국민검사청구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구・신청 취지 및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품을 통해 통계정보 가공하여 청구・신청 대표의 청구・신청서 또는 참고인 	

	진술서 작성에 이용 -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위 양식 외에도 검사 및 조정에 용이한 통계 정보 제공 - 필요시 언론보도에 필요한 통계정보 외에도 피해사례 사례를 공표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후 제공 -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조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집한 개인정보 및 관련서류 일괄 파기 - 기타 경실련 회원을 희망한 경우 회원미디어국 담당자에게 위 개인 정보만을 이관하여 DB 전자장치 내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을 통해 회원가입 및 활동정보 제공에 이용
3. 대표•대리 진술 -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제11조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심의·조정위원회 회부 전 청구·신청인 적격 사항 진술 청구·신청 취지 및 원인 진술(△청구·신청인단 주장 요지, △사고 금융회사들의 공통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치리에 대한 답변, △위반조문 및 법률관계 변론, △입증책임 전환,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사항 서면진술, △방어권 행사를 위한 개별 의견진술 요청, △증거조사 신청, △기타 청구·신청인단의 의견 및 요구사항 전달) 기타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에 처리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또는 협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입증책임 요구 또는 개별 의견진술 요청 시 청구·신청이 직접 부담
4. 분쟁조정 취하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및 제18조	 조정신청의 취하에 자율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합의권고나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자율적으로 동의하는 청구·신청인 들의에 한해서만 수락 또는 취하 통지 동의의결(안)에서 정한 공동목표 또는 최소한의 원금반환 내지 채무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합의권고 또는 조정결정에 불만족 하는 청구·신청인들의에 한해서만 불수용 통지 ※ 개별 사건을 취하하려는 청구·신청인이 취하서(사건명, 당사자,
5. 합의권고 또는 조정결정 수락여부 결정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2조 제5항 및 제29조	** 개월 사건을 취하하려는 정구·신청인에 취하지(자건병, 병자자, 취하사유)를 직접 작성하여 청구·신청인 대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우편, 펙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유선·녹취 등으로 직접 통지하여 조정신청 취하 **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0일 내 청구·신청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대표자가 조정결정수락서 3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양당사자 및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 수락

□ 권리

- 청구·신청인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분쟁의 조정)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동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법률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 어느 하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신청을 권하거나 다른 이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아래 <청구·신청인 적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하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신청 또는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1. 동법 제39조(조정의 효력)에 따라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상호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개별 피해사건에 대해 사고금융회사등(피신청인)이나 또는 사고피해자 (신청인) 어느 한 쪽이 불수용할 경우에는 분쟁조정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 동법 제40조(시효의 중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지만, 이후 분쟁조정신청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합의권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 참여중인 채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3. 동법 제41조(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간 중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동법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천만원 이내 피해 당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분쟁조정 기간 중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 5. 아래 <청구·신청인 적격> 사유에 저촉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각하될 수도 있음을 숙지 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저촉될 경우에는 사항 따라 민사상 불이익이나 형사책임(소송사기 등)이 발생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청구•신청인 적격>

- 가. 본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은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나. 청구·신청인은 위 가.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다. 청구·신청인은 금융회사등(피청구·피신청인들)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 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 위 다.는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 마. 위 다.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 바. 위 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합니다.
- 사. 위 다.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이 아닙니다.
- 아. 위 다.는 청구·신청인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 자. 청구·신청인은 위 사. 및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 ① 청구·신청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혹은, ② 위 다.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사항이나, 본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와 같이 재검사 또는 재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 (4).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피해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신청인들은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경우의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화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향후 민사소송 등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허위의 청구·신청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 등 형사책임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는 위에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사유에 저촉되는 청구·신청인에 한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하여 청구·신청 및 그 위임을 직권으로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의무와 책임

- 청구·신청인들은 관련규칙·세칙 및 신의성실에 따라 △서면작성, △검사 및 조정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조(예: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 및 과련자료의 보완, 사실조사, 조회, 출석조사, 자료제출의 요구, 입증책임 부담, 기타 절차 진행중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된 사실 즉시 통지 등), △자율적인 판단 및 신속한 화해를 위한 존중(예: 법적 판단, 청구·신청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결정 사항, 다른 청구·신청인들의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정보누설 자제, 금융감독원 직원 및 조정·심의 위원회 구성원 등 어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자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청구·신청인단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견제시, 대안제안, 투표, 시민행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 위임의 본지에 따라, 청구·신청인 대표는 대리인으로서 위임의 한계 및 범위 내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이 정한 규정이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실련 규약>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행동강령에 따라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합법적, 평화적, 균형적 시민운동을 실천합니다. 경실련이 정한 관련내규는 http://ccej.or.kr/intro/about-ccej 와 같습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는 위임의 한계나 그 범위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위임한 청구·신청인들은 청구·신청인 대표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용부담

-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에서 정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신청인들에게 조정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 또한 개별적인 가집행이나 증거신청 사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비용(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등)이 발생할 때에도 각자 그 몫을 부담합니다.
- 다만, 국민검사청구와 관련된 처리비용은 금융감독원 등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청구·신청인 대표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비(예: 인쇄비, 자료비, 정보료, 문구비, 유류·교통비, 국가기관의 행정처리에 요구되는 수수료 등 기타 행정비용)는 모금 플랫폼(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을 통해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조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청구·신청인 대표 또는 청구·신청인단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 비용을 각출해 청구·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청구·신청 건은 경실련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 위임의 종료와 자료의 보관

- 청구·신청인들은 자율적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철회할 경우 청구·신청인 대표 및 금융감독원에 철회의사를 모두 통지하여야, 위임은 종료됩니다.
- 검사청구 및 분쟁조정 중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취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위임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피고일 경우 수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청구·신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위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구·신청인이 위에서 정한 적법한 권리행사, 의무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청구·신청인 대표는 언제든지 사임하고 위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에 쌍방(청구·신청인과 사고금융회사등)이 동의한 때에는 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임은 종료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위임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조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신청 대표가 수집했던 청구·신청인들의 전자서면 등을 일괄 파기합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효력의 발생시기 등

- 위임장(<별지 제5-2호 서식>)의 효력은 각 청구·신청인과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접수번호가 포함된 전자서면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된 때 전자서면 및 위임장에 기재된 작성일로부터 소급하여 위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관례에 따릅니다.

□ 담당자

위임사무	관리자 (정)	담당자 (부)
청구·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 02-3673-2143, 766-5623)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회원모집·정보관리 (☎ 02-766-5627~8)	채준하 경실련 회원미디어국장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 작성양식(예시) 및 작성안내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12/별첨3.-분쟁조 정-작성양식-및-작성안내-Ver-2..hwp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finance2@ccej.or.kr
- 온라인 접수폼: https://moaform.com/q/smHdAb
- 모금플랫폼: 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